

선물반송 물품 처리결과 보고



 **광주도시철도공사**
- 감사 팀 -

선물반송 물품 처리결과 보고

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이 반송·접수되어 임직원 행동강령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개 요

- 일 시 : 2014. 8. 13(수)
- 신 고 자 : 임원(부속실), 자산회계팀(계약담당자)
- 제 공 자 :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지부
- 제공자와의 관계 : 계약상대자(용산기지 시설물 관리용역)
- 반송물품 : 포도 6박스



□ 반송물품 기증

- 관련근거 :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
제33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 ②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7. 14>

1. 멸실·부패·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폐기처분한다.
2. 멸실·부패·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한다.

○ 사회복지시설 기증

- 일 시 : 2014. 8. 13(수)
- 기 관 : 광명 노인요양센터(남구 월산동)
 광산구 노인복지관(광산구 운남동)
- 기증물품 : 포도 6박스



붙임 선물반송신고서. 끝.